



제 428회 국회 (임시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공지능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인공지능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

■ 정동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511호)

2025. 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4
1. 제정안의 체계	4
2. 총괄적 검토	5
3. 총칙(제1장)	8
4. 인공지능데이터센터 기반 조성(제2장)	13
5. 인공지능데이터센터 활성화(제3장)	22
6. 인공지능데이터센터 특구 및 지역 활성화(제4장)	34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정동영의원 등 19인

나. 발 의 일 : 2025. 5. 14.

다. 회 부 일 : 2025. 5. 1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하여 세계 주요국들은 글로벌 인공지능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인공지능데이터센터는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의 핵심 인프라로서 국가 인공지능 경쟁력을 결정짓는 척도로 부상하고 있음.

그런데, 인공지능데이터센터는 인터넷데이터센터나 클라우드센터와 구분되는 고성능 인프라임에도 현행법상 별도로 정책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그 특수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고용량 전력·냉각시설·통신망이 동시에 필요한 인프라임에도 일반산업시설로 분류되어 입지 선정 및 전력 증설과 관련하여 행정적 병목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인공지능데이터센터는 분산 인프라가 핵심임에도 이를 유도할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며, 민간사업자가 개별적으로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는 있으나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 전략 산업 인프라로서의 위상 및 정책적 투자 유인은 부족한 상황임.

이에 인공지능데이터센터에 관한 특례 조항 등을 마련하고, 인공지능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을 위한 행정 절차를 효율화하며, 전력·용수·부지 등 기반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인공지능데이터센터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인프라인 인공지능데이터센터를 진흥하여 인공지능 반도체, 초거대 모델, 데이터 산업과 연계될 수 있는 실질적 토대의 조성을 통한 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인공지능기술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의 핵심 기반 시설인 인공지능데이터센터의 체계적인 구축과 운영을 지원하고 관련 산업의 진흥을 도모함으로써 디지털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데이터센터의 안정적 구축 및 운영 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기술 개발 및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인공지능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전력, 용수, 부지 등의 기반 시설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안 제3조).
- 다. 인공지능데이터센터 기반 조성을 위하여 인공지능데이터센터기본 계획 및 시행계획, 국가인공지능데이터센터진흥위원회의 설치, 관계기관의 협조, 실태조사, 데이터센터 건축·운영·관리에 대한 기준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라. 인공지능데이터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인·허가 간소화, 세제 지원, 전력 및 용지·용수 확보 지원, 데이터 지원, 수도권 구축 특례, 해외 사업자 유치·제휴 지원, 해외 진출 지원, 전담기관 지정, 의견 수렴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9조까지).

마. 인공지능데이터센터 특구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인공지능데이터센터 입지, 인공지능데이터센터 특구 지정 및 변경·해제, 인공지능데이터센터 특구에 대한 지원, 비수도권 구축 지원, 규제개선 신청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

Ⅲ. 검토의견

1. 제정안의 체계

- 제정안은 「인공지능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이라는 제명(題名) 하에 총 4개 장 25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규정되어 있음.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인공지능데이터센터 기반 조성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국가인공지능데이터센터진흥위원회의 설치)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관계 기관의 협조)

제9조(실태조사)

제10조(데이터센터 건축·운영·관리에 대한 기준)

제3장 인공지능데이터센터 활성화

제11조(인·허가 간소화)

제12조(세제 지원 등)

제13조(전력 및 용지·용수 확보 지원 등)

제14조(데이터 지원)

제15조(수도권 구축 특례)

제16조(해외 사업자 유치·제휴 지원)

제17조(해외 진출 지원)

제18조(전담기관의 지정)

제19조(의견수렴 절차 마련 등)

제4장 인공지능데이터센터 특구 및 지역 활성화

제20조(인공지능데이터센터 입지)

제21조(인공지능데이터센터 특구 지정)

제22조(인공지능데이터센터 특구의 변경 및 해제)

제23조(인공지능데이터센터 특구에 대한 지원)

제24조(비수도권 구축 지원)

제25조(규제개선 신청 등)

2. 총괄적 검토

- 데이터센터는 서버, 네트워크, 스토리지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장비를 통합 운영·관리하는 시설로¹⁾,
특히 최근에는 인공지능산업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공지능의 개발·활용 등에 이용되는 인공지능데이터센터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전세계 데이터센터 매출은 2023년 3,728억 달러에서 2029년 6,241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²⁾.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데이터센터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데이터센터는 「건축법」상 방송국, 촬영소 등 다른 방송통신시설과 동일한 용도로 분류되어³⁾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 설치⁴⁾,

1)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0조(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① 정부는 지능정보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다수의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을 일정한 공간에 집적시켜 통합 운영·관리하는 시설(이하 “데이터센터”라 한다)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제공 등을 위하여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2) 국회도서관, ‘글로벌 데이터센터 지형도’, “THE 현안” 2024-38호, 2024.12.18.

3) 제2조(정의)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5. 방송통신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24.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방송국(방송프로그램 제작시설 및 송신·수신·중계시설을 포함한다)

나. 전신전화국

다. 촬영소

라. 통신용 시설

마. 데이터센터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4)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지정)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문화예술 진흥법」상 미술작품 설치⁵⁾ 등 소규모 전문인력으로 운영되는 데이터센터의 특성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를 적용받고 있으며, 열섬현상, 전자파 우려 등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데이터센터 건설이 무산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등⁶⁾, 인공지능데이터센터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 구축이 원활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 이에 제정안은 인공지능데이터센터 관련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인공지능데이터센터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기술적·행정적·재정적 특례를 도입하며, 인공지능데이터센터 특구를 조성함으로써 인공지능데이터센터의 체계적인 구축과 운영을 지원하고 관련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려는 것임.
- 다만 최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 제정되었고, 해당 법률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는 만큼 법률 간 정합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고, 특례적 성격의 규정의 경우 다른 법률과의 정합성 및 타 산업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입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 즉, 인공지능기본법의 체계 보완, 일부개정 등을 통해 제정안의 취지를 담을 수 있는지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등 입법경제적 측면을 감안하여

5) 제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하여 회화·조각·공예 등 건축물 미술작품(이하 “미술작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6) 노진균, “갈 곳 잃은 도심 속 데이터센터...주민 반대 해법 찾을까”, 파이낸셜뉴스, 2024.9.1.

살펴야 할 것으로 보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데이터센터의 특수성을 반영한 지원체계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법체계 정합성 및 정책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부 조문의 수정 및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하의 조문별 검토에서 논의함.

3. 총칙(제1장)

가. 정의(안 제2조)

(1) 제정안 요지

-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데이터센터”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2) 제정안 조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공지능을 말한다.
2. “인공지능데이터센터”란 대규모 데이터의 저장·처리·학습·추론 등 인공지능 개발 및 서비스 운영에 특화된 시설로서 그래픽처리장치·신경망 처리장치 등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장비, 전력·공조·냉각 시설 등 관련 기반 시설이 집적된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집적정보통신시설,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센터는 제외한다.

(3) 검토사항

- 안 제2조는 제정안에서 사용되는 용어인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데이터센터’의 의미를 분명히 규정하려는 것으로, ‘인공지능데이터센터’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현실적으로 설비의 종류나 규모 등만으로는 인공지능데이터센터와 그 외의 데이터센터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인공지능데이터센터의 기준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임.

- 둘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집적정보통신시설과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데이터센터가 인공지능데이터센터를 포함하거나 이와 중첩되는 보다 넓은 의미의 개념임을 고려할 때, 이를 인공지능데이터센터에서 제외하는 경우 제정안의 규율 대상이 지나치게 협소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정보통신망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집적정보통신시설’이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집적된 정보통신시설로서 전산실 바닥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의미함⁷⁾.
-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데이터센터’란 지능정보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다수의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을 일정한 공간에 집적시켜 통합 운영·관리하는 시설을 의미함⁸⁾.

- 셋째, 제정안과 인공지능기본법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인공지능기본법에

7) 정보통신망법 제46조(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정보통신시설의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이하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이라 한다)는 정보통신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타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이하 “집적 정보통신시설 사업자”라 한다)

2. 자신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직접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37조(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의 보호조치) ① 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1.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운영·관리하는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전산실 바닥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자

8) 제40조(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① 정부는 지능정보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다수의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을 일정한 공간에 집적시켜 통합 운영·관리하는 시설(이하 “데이터센터”라 한다)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제공 등을 위하여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따른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와 용어 및 정의의 정합성을 맞출 필요성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인공지능기본법은 인공지능의 개발·활용 등에 이용되는 데이터 센터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로 약칭하고 있으며, 이때 데이터센터란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데이터센터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기본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의나 용어를 동일하게 사용하는 것이 법체계적으로 합리적이고, 「지능정보화 기본법」상 데이터센터 및 정보통신망법상 집적정보통신 시설을 제외하는 경우 제정안의 적용범위에서 대다수 시설들이 제외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

9) 제25조(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관련 시책의 추진 등) ① 정부는 인공지능의 개발·활용 등에 이용되는 데이터센터(이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라 한다)의 구축 및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6.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센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인프라 확충 방안에 관한 사항

나. 다른 법률과의 관계(안 제4조)

(1) 제정안 요지

- 인공지능데이터센터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름(안 제4조 제1항).
- 인공지능데이터센터에 적용되는 지원 및 규제의 특례에 관하여는 이 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되, 다른 법률에 이 법의 특례보다 완화된다는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름(제2항).

(2) 제정안 조문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인공지능데이터센터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② 이 법은 인공지능데이터센터에 적용되는 지원 및 규제의 특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에 따른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다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검토사항

- 안 제4조는 제정안과 다른 법률 간의 관계를 정함으로써 제정안의 성격을 분명히 하려는 것으로, 제정안이 인공지능데이터센터 관련 사항 전반에 관해서는 기본법의 성격을, 지원 및 규제의 특례에 관해서는 특별법의 성격을 갖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임.

- 다만 현재 인공지능기본법에서도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관련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¹⁰⁾, 제정안과 인공지능기본법의 관계를 분명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또한, 안 제4조 제2항은 인공지능데이터센터와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더 유리한 특례가 있다면 이에 따르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하나의 대상에 대해 여러 법률에 특례가 산재하는 경우 수범자로서는 특례의 적용 여부 및 범위에 대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10) 제25조(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관련 시책의 추진 등) ① 정부는 인공지능의 개발·활용 등에 이용되는 데이터센터(이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라 한다)의 구축 및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2. 중소기업, 연구기관 등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이용 지원
3.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등 인공지능 관련 인프라 시설의 지역별 균형 발전을 위한 지원

4. 인공지능데이터센터 기반 조성(제2장)

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5조)

(1) 제정안 요지

- 정부는 인공지능데이터센터의 효율적 구축과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인공지능데이터센터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인공지능데이터센터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함(안 제5조).

(2) 제정안 조문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인공지능데이터센터의 효율적 구축과 진흥을 위하여 인공지능데이터센터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공지능데이터센터 발전 목표 및 정책 방향
2. 인공지능데이터센터 입지, 전력 수급, 네트워크 연계 방안
3. 인공지능데이터센터 관련 기술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4. 인공지능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관련 제도 개선 사항
5. 수도권(「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제외한 지역(이하 “비수도권”이라 한다)의 인공지능데이터센터 구축 활성화 방안
6. 인공지능데이터센터 관련 데이터 수집·보관·활용 촉진 방안
7. 자원 조달 및 공공수요 발굴 등의 투자 활성화 방안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인공지능데이터센터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3) 검토사항

- 안 제5조는 인공지능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현재 인공지능기본법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3년마다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해당 계획에서 인공지능등에 관한 정책의 기본 방향과 전략 등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인공지능 기본계획에도 인공지능데이터센터와 관련된 사항이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인공지능 기본계획과 별도로 개정안에 따른 인공지능데이터센터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는지 논의할 필요가 있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계획 간 일관성 및 연계를 위하여 수립 주기를 인공지능 기본계획과 일치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개정안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도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자체의 규모나 인공지능산업에 대한 역량 및 관심도 등과 무관하게 모든 지자체에 매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은 지자체에 과도한 부담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미 인공지능기본법에 따른 기본계획이 제정안에 따른 인공지능데이터센터기본계획의 내용을 포괄하고 있으므로, 인공지능기본법상 추진체계를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임.

나. 국가인공지능데이터센터진흥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 (안 제6조 및 제7조)

(1) 제정안 요지

- 인공지능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소속으로 국가인공지능데이터센터진흥위원회를 둔(안 제6조).
-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장 및 공공기관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 등을 요구할 수 있음(안 제7조).

(2) 제정안 조문

제6조(국가인공지능데이터센터진흥위원회의 설치) ① 인공지능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7조에 따른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소속으로 국가인공지능데이터센터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3. 제10조에 따른 데이터센터 건축·운영·관리에 대한 기준에 관한 사항
4. 제15조에 따른 수도권 구축 특례에 관한 사항
5. 제20조에 따른 인공지능데이터센터 입지 선정을 위한 기준에 관한 사항

6. 제21조에 따른 인공지능데이터센터 특구 지정에 관한 사항

7. 제23조에 따른 인공지능데이터센터 특구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8. 제25조에 따른 규제개선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인공지능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 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행정안전부 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2. 위원장이 위촉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

3. 인공지능데이터센터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검토사항

- 안 제6조 및 제7조는 인공지능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국가인공지능데이터센터진흥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해당 위원회는 인공지능기본법에 따른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소속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 국가인공지능위원회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을 위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대통령 소속의 위원회로서, 위원장 1명(대통령)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4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됨¹¹⁾.

○ 다만, 인공지능기본법은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 확충 방안에 관한 사항도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고¹²⁾,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 분야별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 위원회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어¹³⁾, 인공지능기본법을 통해서도 인공지능데이터센터에 관한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제정안과 같이 인공지능데이터센터 분야에 대해서만 별도

11) 제7조(국가인공지능위원회) 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을 위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4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4항제4호에 따른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고, 특정 성(性)으로만 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국가안보실의 인공지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차장
3. 대통령비서실의 인공지능에 관한 업무를 보좌하는 수석비서관
4. 인공지능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12) 제8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6.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센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인프라 확충 방안에 관한 사항

13) 제10조(분과위원회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 분야별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법률을 통해 위원회를 설치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임.

- 한편, 안 제22조는 인공지능데이터센터 특구의 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도 국가인공지능데이터센터진흥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¹⁴⁾,

안 제6조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특구 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도 포함할 필요가 있어 보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미 인공지능기본법에 따른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제정안에 따른 국가인공지능데이터센터진흥위원회의 내용을 포괄하고 있으므로, 인공지능기본법상 추진체계를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임.

- 국가정보원은 제정안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인공지능데이터센터 건축·운영·관리에 대한 기준이 포함되어 있고, 인공지능데이터센터 보안사고 시 국가안보 위해(危害) 가능성을 고려할 때 해당 기준 심의에 국가정보원이 참여할 필요가 있으므로, 국가정보원 차장이 국가인공지능데이터센터진흥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14) 제22조(인공지능데이터센터 특구의 변경 및 해제) ① 정부는 인공지능데이터센터 특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공지능데이터센터 특구의 변경 및 해제를 할 수 있다.

다. 데이터센터 건축·운영·관리에 대한 기준(안 제10조)

(1) 제정안 요지

- 정부는 인공지능데이터센터의 고전력·고집적·고성능 등 특수성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구조, 전력 설비, 냉각 시스템, 보안, 재난 예방 및 복구 등에 관한 별도의 기술 기준 또는 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이를 정함에 있어 관계 법률의 규정과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음(안 제10조).

(2) 제정안 조문

제10조(데이터센터 건축·운영·관리에 대한 기준) ① 정부는 인공지능데이터센터의 고전력·고집적·고성능 등 특수성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구조, 전력 설비, 냉각 시스템, 보안, 재난 예방 및 복구 등에 관한 별도의 기술 기준 또는 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기준 또는 지침을 정함에 있어 「건축법」, 「전기사업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관계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3) 검토사항

- 안 제10조는 현재 인공지능데이터센터가 일반 건축물로 분류됨에 따라 특성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를 받고 있음을 고려하여, 정부가 법률과 별도로 인공지능데이터센터에 관한 기술기준 또는 지침을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 다만 하위 규범인 고시나 지침에서 상위 규범인 법률과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요소 중 하나인 법률우위의 원칙에 반하는 측면이 있음.

- 법률우위의 원칙이란 행정주체의 모든 행정작용은 그를 규율하는 법률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으로, 행정입법을 포함한 행정의 모든 영역에 적용됨¹⁵⁾.

○ 따라서 관계 법률과 다르게 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의 경우, 고시나 지침에 위임하기보다는 법률에 특례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참고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¹⁶⁾ 등 유사 입법례를 살펴보면, 법률의 목적 달성을 위해 관계 법률과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의 경우 법률에서 특례를 직접 규정하고 있음.

15) 정하중, 「행정법개론」 제13판, 법문사, 2019, p.25

16) 제21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제22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제23조(「환경영향평가법」 등의 적용 특례), 제24조(「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의 적용 특례), 제25조(「산지관리법」의 적용 특례), 제26조(「수도법」의 적용 특례), 제27조(「하수도법」의 적용 특례), 제27조의2(「경관법」의 적용 특례), 제28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5. 인공지능데이터센터 활성화(제3장)

가. 세제 지원 등(안 제12조)

(1) 제정안 요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데이터센터의 진흥 및 기반 조성
이용 촉진을 위하여 조세 감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폐열회수기술, 단열기술, 액침냉각기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효율화에 필요한 기술의 개발 및 투자를 위하여 세제상·
금융상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2조).

(2) 제정안 조문

제12조(세제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데이터센터의 진흥
및 기반 조성 이용 촉진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
법」, 그 밖의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 감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폐열회수기술, 단열기술, 액침냉각기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데이터센터 효율화에 필요한 기술의 개발 및 투자를 위하여 세제상
또는 금융상 필요한 지원 조치를 할 수 있다.

(3) 검토사항

- 안 제12조는 인공지능데이터센터 진흥을 위한 세제상·금융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다만 현행법상 세제 지원은 「조세특례제한법」¹⁷⁾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¹⁸⁾ 등 조세 관계법의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므로, 제정안에 세제 지원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은 실익이 낮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기획재정부는 개별법상 조세감면을 규정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개별법에 근거규정이 없더라도 필요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세제 지원이 가능하므로 개별법에 규정을 둘 실익도 없다는 의견을 제출함.
-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감면은 지방세관계법을 통해서만 가능하므로, 개별법에 이를 규정하는 경우 일반 납세자가 다른 법령에 의한 지방세 감면도 가능한 것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고, 지방세 특례 운영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17) 제3조(조세특례의 제한) ①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 (각호생략)

18) 제3조(지방세 특례의 제한) ① 이 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약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

나. 전력 및 용지·용수 확보 지원 등(안 제13조)

(1) 제정안 요지

- 정부는 인공지능데이터센터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하여 전력계통 연계계획 수립 시 인공지능데이터센터 수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관련 부담금의 감면·지원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음(안 제13조 제1항).
- 정부는 인공지능데이터센터 구축에 적합한 부지 확보를 지원하고 냉각에 필요한 공업용수 등의 공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제2항).
- 정부는 인공지능데이터센터 운영 효율화를 위한 전용 전기요금 제도 도입 또는 지역별·시간대별 전기요금 할인 제도를 검토·추진할 수 있음(제3항).

(2) 제정안 조문

제13조(전력 및 용지·용수 확보 지원 등) ① 정부는 인공지능데이터센터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하여 전력계통 연계계획 수립 시 인공지능데이터센터 수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관련 부담금의 감면 또는 지원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인공지능데이터센터 구축에 적합한 부지 확보를 지원하고, 냉각에 필요한 공업용수 등의 공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인공지능데이터센터 운영 효율화를 위한 전용 전기요금제도 도입 또는 지역별·시간대별 전기요금 할인 제도를 검토·추진할 수 있다.

(3) 검토사항

- 현행 「전기사업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계획에는 주요 송전·변전설비계획에 관한 사항(전력계통 연계 계획)이 포함됨¹⁹⁾.
- 또한, 동법은 전기판매사업자(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기본공급약관)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²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하여 기본공급약관을 작성할 때에 송전·배전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²¹⁾.
- 현재 한국전력공사의 기본공급약관에 따르면 계약종별은 전기사용 용도에 따라 주택용전력, 일반용전력, 교육용전력, 산업용전력, 농사용전력, 가로등, 예비전력, 임시전력으로 구분되며²²⁾, 지역별·산업별로 전기요금을 차등하여 부과하고 있지는 않음.

19) 제25조(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⑥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발전설비계획 및 주요 송전·변전설비계획에 관한 사항

20) 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 ① 전기판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이하 “기본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1) 제45조(지역별 전기요금) 전기판매사업자는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하여 「전기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공급약관을 작성할 때에 송전·배전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2)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 제55조(계약종별의 구분) 계약종별은 전기사용계약단위의 전기사용 용도에 따라 주택용전력, 일반용전력, 교육용전력, 산업용전력, 농사용전력, 가로등, 예비전력, 임시전력으로 구분합니다.

- 안 제13조는 인공지능데이터센터 운영에 다량의 전력이 소비됨을 감안하여, 인공지능데이터센터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하여 전력 계통 연계계획 수립 및 전기요금 관련 특례 등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2023년 12월 말 기준 국내 데이터센터 150개의 총계약전력은 1,986MW에 달하며²³⁾, 인공지능데이터센터의 경우 기존 데이터센터에 비해 전력 소비규모가 더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전력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임.
- 다만 현재 관련 법령 및 기본공급약관에서 특정 산업에 대한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음을 고려할 때, 인공지능데이터센터에 대해서만 전력 공급의 특례를 두는 경우 국가 차원에서의 전력망 안정성·효율성이나 산업 간 형평에 어긋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는 송변전설비계획은 전체 산업 수요를 전망하여 수립되고 있으므로, 특정 사업의 전력수요를 우선 고려하는 경우 국가 전력망 확충의 불균형이 우려되고, 전기요금은 사용용도, 계약전력, 공급전압 등에 따라 구분된 종별로 운영되므로 특정 계층이나 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전용 요금제 도입은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 해외의 경우에도 특정 대상에 대한 전용 요금제를 운영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며,

23) 한국전력공사, 데이터센터 전기공급 현황, 2023.12.31.

특정 대상에 대한 요금 감면 시 해당 비용이 다른 일반 사용자에게 전가되어 고객 간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임.

다. 데이터 지원(안 제14조)

(1) 제정안 요지

- 정부는 인공지능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연구개발 및 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데이터의 개방 및 활용을 촉진하고, 데이터의 안전한 수집·보관·학습·활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안 제13조 제1항).
- 정부는 인공지능데이터센터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의 활성화를 통하여 인공지능 대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간 데이터의 적정한 수집·보관·학습·활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제2항).

(2) 제정안 조문

제14조(데이터 지원) ① 정부는 인공지능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연구개발 및 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데이터의 개방 및 활용을 촉진하고, 데이터의 안전한 수집·보관·학습·활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인공지능데이터센터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의 활성화를 통하여 인공지능 대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간 데이터의 적정한 수집·보관·학습·활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3) 검토사항

- 안 제14조는 인공지능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연구개발 및 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민간 데이터의 수집·보관·학습·활용을 지원하려는 것임.

- 다만, 인공지능데이터센터 외에도 인공지능산업 및 기술 전반에 걸쳐 데이터의 수집·활용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에 인공지능기본법 및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데이터산업법”)에서 데이터 수집·활용 등 지원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이미 규정하고 있음.
- 인공지능기본법은 인공지능의 개발·활용 등에 사용되는 데이터(학습용데이터)의 생산·수집·관리·유통 및 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 추진, 사업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²⁴⁾.
- 데이터산업법은 데이터 생산 및 결합에 대한 지원, 데이터안심구역 지정 등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다양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인공지능데이터센터 활용을 위한 데이터에 대해서만 지원 근거를 별도로 둘 필요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재 인공지능기본법 및 데이터산업법 등에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및 데이터 활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이미

24) 제15조(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관련 시책의 수립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공지능의 개발·활용 등에 사용되는 데이터(이하 “학습용데이터”라 한다)의 생산·수집·관리·유통 및 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학습용데이터의 생산·수집·관리·유통 및 활용 등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정부는 학습용데이터의 생산·수집·관리·유통 및 활용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다양한 학습용데이터를 제작·생산하여 제공하는 사업(이하 “학습용데이터 구축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학습용데이터 구축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학습용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제공·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하 “통합제공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관리하고 민간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국가정보원은 법률 간 충돌 방지를 위하여 제정안에 따른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 기상청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25)에 따라 지정된 인공 지능 분야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의 연구개발 등 운영에 필요한 정보자원을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25) 제18조(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전략기술 및 인력의 육성·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해당 기관이 설립·운영하는 연구소를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이하 “특화연구소”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2.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4.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5. 그 밖에 특화연구소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라. 의견수렴 절차 마련 등(안 제19조)

(1) 제정안 요지

- 정부는 인공지능데이터센터 주변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기준 또는 절차를 마련할 수 있음(안 제19조 제1항).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데이터센터와 관련된 민원 해소를 위하여 주변 지역 주민에게 의견수렴 구역, 주체, 시기 및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함(제2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의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한 경우 민원을 이유로 인·허가 신청 및 착공 신고를 반려할 수 없음(제3항).

(2) 제정안 조문

제19조(의견수렴 절차 마련 등) ① 정부는 인공지능데이터센터 주변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기준 또는 절차를 마련할 수 있다.

②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데이터센터와 관련된 민원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데이터센터 주변 지역 주민에게 의견수렴 구역, 주체, 시기 및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한 경우 민원을 이유로 인·허가 신청 및 착공 신고를 반려할 수 없다.

(3) 검토사항

- 현행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²⁶⁾,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경우 허가권자에게 공사 계획을 신고하여야 함²⁷⁾).

○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데이터센터가 비교적 소규모의 전문 인력으로 운영되어 고용 창출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적은 점, 데이터센터가 인근 주민에게 기피시설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적극적으로 데이터센터를 유치할 유인이 크지 않을 수 있고, 실제로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데이터센터 건설이 무산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²⁸⁾).

○ 이에 안 제19조는 정부가 마련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인근 주민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친 경우 민원을 이유로 인·허가 및 착공 신고를 반려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인공지능데이터센터 건설을 촉진하려는 것임.

○ 다만 현행 「건축법」상 건축허가는 기속행위로서,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이 관계 법령에 반하지 않는 이상 허가권자는 당연히 건축을 허가하여야 하고, 민원 등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유로 이를 반려할 수 없음.

- 판례는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할 사유가 되지 않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법령의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고 보았음²⁹⁾.

26)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7) 제21조(착공신고 등) ① 제11조·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공사 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28) 노진균, “갈 곳 잃은 도심 속 데이터센터...주민 반대 해법 찾을까”, 파이낸셜뉴스, 2024.9.1.

- 따라서 현재도 법령상 근거 없이 민원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거부하거나 착공신고를 반려할 수 없는 점,
제정안과 같이 규정하는 경우 오히려 다른 건축물에 대해서는 민원을 이유로 신고 반려가 가능한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29)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두9762 판결

6. 인공지능데이터센터 특구 및 지역 활성화(제4장)

가. 인공지능데이터센터 특구 지정·변경·해제(안 제21조 및 제22조)

(1) 제정안 요지

- 정부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하여 국가인공지능데이터센터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공지능데이터센터 특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³⁰⁾과 연계하여 제도적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함(안 제21조 제1항).
-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력 제조산업이 집적된 지역과 연계하여 인공지능데이터센터 특구를 지정하고, 제조 분야 인공지능 실증 추진 및 인공지능 통합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며, 제조 분야 데이터플랫폼 구축 및 활용 기반 조성을 위한 제조 분야 데이터의 축적 방안 및 재원 확충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음(제2항부터 제4항까지).

30)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이란 제3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다만, 구역전기 공급 구역(「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자가 전기를 공급하는 특정한 구역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일부가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해당 구역 전기 공급구역 전체를 포함한다.

제33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신청) ① 분산에너지특화지역으로 지정받으려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35조에 따른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6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3조제1항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료를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신청을 한 시·도지사에게 자료의 보관을 요구할 수 있고, 자료 보관에 걸린 기간은 전단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고려하여 에너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을 승인하고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 정부는 필요한 경우 국가인공지능데이터센터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공지능데이터센터 특구의 변경 및 해제를 할 수 있음(안 제22조).

(2) 제정안 조문

제21조(인공지능데이터센터 특구 지정) ① 정부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공지능데이터센터 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과 연계하여 다양한 분산에너지 활용 및 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력 제조 산업이 집적된 지역과 연계하여 인공지능데이터센터 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조 분야 인공지능 실증의 추진 및 제조 분야 인공지능 통합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특구 지정 시 제조 분야 데이터플랫폼 구축 및 활용 기반 조성을 위한 제조 분야 데이터의 축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제3항에 따른 제조 분야 데이터플랫폼 구축 및 활용 기반 조성을 위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원 확충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인공지능데이터센터 특구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인공지능데이터센터 특구의 변경 및 해제) ① 정부는 인공지능데이터센터 특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공지능데이터센터 특구의 변경 및 해제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공지능데이터센터 특구의 변경 및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검토사항

- 안 제21조 및 제22조는 국가균형발전 및 제조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인공지능데이터센터 특구를 지정·변경·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안 제21조 제1항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현재 데이터센터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³¹⁾, 비수도권에 특구를 지정함으로써 데이터센터의 지방분산을 유도하고 데이터센터 산업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으로 보임.
- 다만, 일반적으로 특구 지정은 국가균형발전뿐만 아니라 산업의 밀집에 따른 집적 이익을 누리기 위한 측면도 있는바, 인공지능데이터센터의 밀집에 따른 집적 이익의 창출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 등을 고려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일반적으로 사업자 입장에서는 서비스 수요자와 데이터센터의 거리가 멀어지는 경우 데이터 전송 지연으로 서비스 질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데이터센터 간 거리보다는 실수요자와의 거리가 중요한 측면이 있음.
- 또한, 데이터센터가 한 곳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 화재, 지진 등 재난 발생에 따라 서비스가 중단될 위험에 동시에 노출되는 문제가 있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데이터센터가 다량의 전력을 소모함에 따라 관련 전력계통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논의할

31) 2024년 기준 민간 데이터센터 92개 중 68개(73.9%)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음(참고자료 참조)

필요가 있음.

- 한편, 안 제21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제조 분야와 관련된 데이터 센터 특구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데, 다른 산업 분야와 달리 제조 분야에 대해서만 데이터플랫폼 구축, 재원 확충 등 특별한 지원규정을 두는 것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 및 타 산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기본법에 따른 인공지능집적단지³²⁾가 특구의 개념을 포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업계 의견을 감안할 때 특구보다는 인·허가 절차 간소화, 인·허가 의견수렴 시 타임아웃제 도입, 창구일원화 등 행정절차 효율화 방안이 보다 실효적일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임.

32) 제23조(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인공지능 개발·활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업, 기관이나 단체의 기능적·물리적·지역적 집적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집적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지능집적단지(이하 “인공지능집적단지”라 한다)를 지정하여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나. 인공지능데이터센터 특구에 대한 지원(안 제23조)

(1) 제정안 요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구의 원활한 조성·운영을 위하여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전력공급시설, 용수공급시설 등 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그 비용을 전액 지원할 수 있음(안 제23조 제1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데이터센터 특구 입주기업체와 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 부담금 감면, 국·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감면, 토지의 매입·임대, 신용보증, 비용지원 등을 할 수 있음(제2항부터 제7항까지).

(2) 제정안 조문

제23조(인공지능데이터센터 특구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데이터센터 특구의 원활한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다음 각 호의 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을 전액 지원할 수 있다.

1. 전력공급시설(송전선로, 변전소, 변환소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을 말한다)
2. 용수공급시설(용수관로, 가압장, 정수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을 말한다)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발전 시설
4. 공원 및 공동구
5. 그 밖에 인공지능데이터센터 특구에 필요한 기반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데이터센터 특구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86조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데이터센터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공지능데이터센터 특구 입주기업체 및 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2.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 「초지법」 제23조제8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데이터센터 특구에 입주하는 입주기업체 및 연구기관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등 국유 또는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및 감면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감면대상사업, 사용료·대부료 및 감면율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데이터센터 특구로 지정된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지매입의 요건 등 부지매입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인공지능데이터센터 특구 입주기업체가 필요로 하는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신

용보증을 할 수 있다.

1.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2.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3.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한 신용보증재단
- ⑦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데이터센터 특구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인공지능데이터센터 설립을 위한 인공지능데이터센터 특구 내 토지 등 취득비용
 2. 인공지능데이터센터와 관련된 건축, 설비투자, 연구시설 등 인프라 투자 소요비용
 3. 인공지능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그래픽처리장치·신경망처리장치 등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장비 등 취득비용

(3) 검토사항

- 안 제23조는 인공지능데이터센터 특구의 기반시설 조성을 지원하고, 입주기업체 및 연구기관 등에 대한 부담금 면제 등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인공지능데이터센터 특구 조성 및 운영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 다만, 현재 부담금 감면의 경우 「산지관리법」 33) 및 동법 시행령 등 개별 부담금의 근거법령에서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어 해당

33) 제19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 ⑤ 산림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기간을 정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으로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
3. 광물의 채굴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

법령의 개정을 통해 제정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제정안과 같이 개별법에 별도로 감면규정을 두는 것은 법체계에 부합하지 않을 우려가 있음.

- 또한, 국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의 경우 현재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므로³⁴⁾,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이 개정되지 않는 경우 개별법에 사용료·대부료 감면 규정을 두더라도 감면이 불가함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제정안의 각 조문에 대하여 관계부처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1) 기반시설 설치 지원 (안 제23조 제1항)

- 산업통상자원부는 인공지능데이터센터 특구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설치하거나 비용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한정된 재정규모를 고려할 때 인공지능데이터센터 특구에 대하여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경우 다른 분야의 설비 지원이 위축될 수 있어 전액 지원 부분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2) 부담금 감면 (안 제23조 제3항)

- 기획재정부는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투명성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한 「부담금관리 기본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부담금의 근거 법령이 아닌

3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국유재산특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뜻한다.

1.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제34조제1항 또는 제47조제1항에 따르지 아니한 국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그 밖의 사용 또는 수익에 대한 대가(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의 감면

제4조(국유재산특례의 제한) ① 국유재산특례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

② 이 법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

타 법령에서 개별 부담금의 감면조항을 별도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 산림청은 다른 법령에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여부를 규정하는 것은 산지전용 등에 따른 대체산림조성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다른 산지전용행위와의 형평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여부는 소관 법률인 산지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3) 국·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및 토지의 매입·임대(안 제23조 제4항 및 제5항)

-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등에서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유재산의 통일적 운영을 위해 사용료·대부료 감면에 대해서는 해당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행정 목적 사용을 위해서가 아닌 임대를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문 의 처

02)6788-5230

※참고: 2024년 기준 국내 민간 데이터센터 현황(출처: 한국데이터
센터연합회)

연번	운영주체	센터명	소재지
1	BNK금융그룹	BNK금융그룹 IT센터	부산 강서구
2	CJ올리브네트웍스	CJ올리브네트웍스 송도 IDC	인천 연수구
3	DB Inc	DB죽전데이터센터	경기 용인시
4	DGB금융그룹	DGB혁신센터	대구 동구
5	Digital Realty	ICN10	서울 마포구
6	IBK 기업은행	기업은행 IT센터	서울 중구
7	IBK 기업은행	기업은행 IT센터 파이낸스	경기 용인시
8	JB금융	광주은행본점센터	광주 동구
9	KB금융그룹	KB국민은행 염창센터	서울 강서구
10	KB금융그룹	KB국민은행 통합 IT센터	경기 김포시
11	KB금융그룹	KB국민은행 여의도센터	서울 영등포구
12	KINX	케이아이엔엑스 도곡센터	서울 강남구
13	KT Cloud	KT청주(분평)IDC	충북 청주시
14	KT Cloud	KT대전(탄방)IDC	대전 서구
15	KT Cloud	KT목동1IDC	서울 양천구
16	KT Cloud	KT강남IDC	서울 강남구
17	KT Cloud	KT여의도IDC	서울 영등포구
18	KT Cloud	KT천안CDC	충남 천안시
19	KT Cloud	KT분당IDC	경기 성남시
20	KT Cloud	KT목동2IDC	서울 양천구
21	KT Cloud	KT용산IDC	서울 용산구
22	KT Cloud	KT부산송정 GHC	부산 해운대구
23	KT GDH	KT GDH	경남 김해시
24	LG CNS	상암IT센터	서울 마포구
25	LG CNS	부산 글로벌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부산 강서구
26	LG CNS	LG CNS 인천센터	인천 계양구
27	LG CNS	LG CNS 가산센터	서울 금천구
28	LG유플러스	LG U+ 서초1 IDC	서울 서초구
29	LG유플러스	LG U+ 서초2 IDC	서울 서초구

연번	운영주체	센터명	소재지
30	LG유플러스	LG U+ 대구IDC센터	대구 중구
31	LG유플러스	LG U+ 가산IDC	서울 금천구
32	LG유플러스	LG U+ 상암IDC	서울 마포구
33	LG유플러스	LG U+ 논현IDC	서울 강남구
34	LG유플러스	LG U+ 평촌메가센터	경기 안양시
35	Microsoft	MS KOREA	부산 강서구
36	NH 금융그룹	NH통합IT센터	경기 의왕시
37	NH 금융그룹	농협정보기술연구원	경기 안성시
38	NHN 클라우드	NHNC	경기 성남시
39	NICE홀딩스	나이스데이터센터	서울 강동구
40	SK브로드밴드	SK브로드밴드 IDC서초센터	서울 서초구
41	SK브로드밴드	SK브로드밴드 IDC일산센터	경기 고양시
42	SK브로드밴드	SK브로드밴드 IDC분당센터	경기 성남시
43	SK브로드밴드	SK브로드밴드 가산IDC	서울 금천구
44	SK브로드밴드	SK브로드밴드 일산2IDC	경기 고양시
45	SK주) C&C	SK C&C 대덕데이터센터	대전 유성구
46	SK주) C&C	SK C&C 판교데이터센터	경기 성남시
47	SK텔레콤	성수국사	서울 성동구
48	SK텔레콤	대덕국사	대전 서구
49	교보정보통신구 교보-IBM	교보데이터센터	인천 연수구
50	네이버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각 춘천	강원 춘천시
51	네이버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각 세종	세종 집현동
52	농협정보시스템	농협정보시스템 여의도 IDC센터	서울 영등포구
53	다우기술	다우IDC마포센터	서울 마포구
54	대상정보기술	대상그룹 전산센터	서울 중랑구
55	더존비즈온	더존비즈온 D-클라우드센터	강원 춘천시
56	드림마크원드림라인	드림마크원 구로IDC	서울 구로구
57	롯데 이노베이트	제1센터 서울센터	서울 금천구
58	롯데 이노베이트	롯데정보통신 용인 정보기술연구소	경기 용인시
59	롯데 이노베이트	마북4센터	경기 용인시
60	삼성SDS	삼성SDS 수원데이터센터	경기 수원시

연번	운영주체	센터명	소재지
61	삼성SDS	삼성SDS 구미데이터센터	경북 구미시
62	삼성SDS	삼성SDS 상암데이터센터	서울 마포구
63	삼성SDS	삼성SDS 춘천 데이터센터	강원 춘천시
64	삼성SDS	삼성SDS 동탄 데이터센터	경기 화성시
65	세종네트웍스	분당센터	경기 용인시
66	수협중앙회	데이터센터	서울 송파구
67	신세계아이앤씨	신세계아이앤씨 데이터센터	경기 김포시
68	신한은행데이터센터	신한은행데이터센터	경기 용인시
69	신한은행재해복구센터	신한은행 재해복구센터	경기 고양시
70	싸이버원	싸이버원 IDC	서울 동작구
71	아시아나IDT	아시아나데이터센터	서울 강서구
72	우리에프아이에스	우리FIS 상암센터	서울 마포구
73	카카오	안산 데이터센터	서울 강남구
74	케이엘넷	IDC센터	서울 강남구
75	코스콤	코스콤 여의도 DC	서울 영등포구
76	코스콤	코스콤 안양센터	경기 안양시
77	포스코DX	포스코 포항데이터센터	경북 포항시
78	포스코DX	포스코 충주데이터센터	충북 충주시
79	포스코DX	포스코 광양데이터센터	전남 광양시
80	하나금융티아이	통합데이터센터	인천 서구
81	한화시스템	한화그룹통합데이터센터	경기 용인시
82	현대오토에버	현대오토에버 파주데이터센터	경기 파주시
83	현대오토에버	현대오토에버 광주데이터센터	광주 광산구
84	현대오토에버	현대오토에버 의왕 데이터센터	경기 의왕시
85	호스트웨이아이디씨	호스트웨이IDC	경기 성남시
86	현대무백스	현대무백스 IDC센터	서울 종로구
87	신테카바이오	신테카바이오	대전 유성구
88	NHN클라우드	국가AI데이터센터	광주 북구
89	KINX	과천데이터센터	경기 과천시
90	LG유플러스	평촌2센터	경기 안양시
91	드림마크원	인천데이터센터	인천 가좌동
92	에퀴닉스	SL2x	경기 고양시